

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 "하랑" 회칙

제 1 장. 총 칙

제 1 조 [명칭] 본회는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 "하랑"이라 한다. (이하, "본회"라 한다.)

제 2 조 [목적] 본회는 회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경천애인정신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창조적 계발능력을 함양으로 대학과 학생의 자율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[회원의 자격]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 단 휴학, 제적 또는 정학 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한다.

제 4 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
- ① 본회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활동에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.

제 5 조 [기능]

- ① 학술연구활동
- ② 문화 및 취미활동
- ③ 교양, 친목 및 학생 자치활동
- ④ 각종 봉사활동

제 6 조 [기구]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둔다.

제 2 장. 대 의 원 회

제 7 조 (지위)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

제 8 조 (구성) 대의원회는 직접선거에 의한 계열대표 구성한다. (각반 대표, 부대표 총 2인) 대의원 공석 시 7일 이내 선출하여 학생회장에게 통보한다.

제 9 조 (선출)

- ① 학생회장은 2학년 재학생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- ② 부학생회장은 1학년 재학생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- ③ 총무는 1, 2학년 재학생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- ④ 서기는 1, 2학년 재학생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
제 10 조 (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다.

제 11 조 (직능)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가진다.

- ① 회칙개정, 발의 및 의결권
- ② 학과비 책정, 심의 및 의결권
- ③ 집행부에서 심의 제출한 예산안, 결산안, 사업계획 및 그 보고의 심의와 승인권
- ④ 본회의 회계, 서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
- ⑤ 학생회장의 불신임권

가. 대의원회는 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

나. 불신임 결의는 학생·장학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다. 불신임 의결이 되었을 때는 해당 당사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- ⑥ 집행부 모든 인원의 출석 요구권
- ⑦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제 12조 (소집)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, 9월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학생회장 및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, 학생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한다.
- ③ 대의원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. 단, 전항의 단서는 예외로 한다.

제 13 조 (의결) 재적 위원 2/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- ⑥ 기타 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제 3 장. 집행부

제 1 절 학생회

제 14조 (지위)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제 15조 (임기) 학생회장, 부회장, 서기, 총무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6조 (자격) 학생회장, 부회장, 서기, 총무의 피선 자격은 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 제4조와 같다.

제 17조 (선거방법) 학생회장, 부회장, 서기, 총무는 별도로 정하는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

제 18 조(업무 및 권한)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① 집행부 각 부서를 총괄한다.
- ②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.
- ③ 본회의 전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결의안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- ④ 집행부 모든 인원의 해임권을 갖는다.
- ⑤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출석 요구 시 출석하여야 하며 대의원 회의의 의결 사항과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.
- ⑥ 학생회장은 학생활동의 중대사안에 관한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.
- ⑦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⑧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집행한다.

제 19조 (신분보장)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과 학교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으며 대의원 회의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

제 2 절 집행위원회

제 20조 (구성)

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총무, 서기 및 각 부장, 차장으로 구성된다.

제 21조 (지위)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
제 22조 (부장, 차장 자격선출)

- ① 기획부, 문화체육부, 홍보부 각 부서의 부장, 차장은 1, 2학년 재학생 중 누적 성적 3.0점 이상인 자가 지원 자격을 가진다. (단, 1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.)
- ② 현 학생회와 차기 최고 집행부의 면접으로 선출한다. 단, 차기 최고 집행부의 선출이 늦어질 시 차기 집행부의 선출 또한 늦춰진다.

제 23조 (업무 및 권한)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
- 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.
- ② 각부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.
- ③ 학생회의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심의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.
- ④ 학생의 자체 예산을 검토 심의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.
- ⑤ 각부 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차장 1인을 두며 차장은 부장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 또한 필요 시 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 각부 산하에 특별연구회를 둘 수 있다.
- ⑥ 개강총회의 구성원이 된다. (단, 차장은 제외)
- ⑦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[회장] 본 학과학생회장은 학과학생회를 대표한다.

<제1항> [활동]

- 1) 학과학생회장은 학과학생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총학생회와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대표자가 된다.
- 2) 학우들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과 측에 건의한다.
- 3) 교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과 행사 및 프로그램과 학생회, 학과 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.
- 4) 학생회 외의 대외적인 활동과 행사에 참여한다.

<제2항> [의무와 책임]

본 학과학생회장은 대내적으로 이 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. 대외적으로 총학생회의 회의내용을 회원에게 알린다.

<제3항> [대표선출]

학과학생회장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 (단, 온라인 투표 시 학교 인증이 가능한 계정 사용하며 구글 설문지 또는 카카오톡 투표 선거로 선출한다.)

<제4항> [임기]

학과학생회장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다.

<제5항> [자격]

학과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본 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(3학년 진학생)으로 누적 성적 3.5점 이상으로 한다. (단, 누적 성적 3.0점 이상의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추천서에 의해서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.)

[부학회장]

본 학과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, 학생회장의 부재 시나 회의 불참 시 자동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.

<제1항> [활동]

- 1) 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회장을 도와 총괄한다.
- 2) 학생회장이 부재 시 그 역할과 권한을 대행한다.

<제2항> [의무와 책임]

학과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회장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.

<제3항> [선출]

학과학생회 부회장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 (단, 온라인 투표 시 학교 인증이 가능한 계정 사용하며 구글 설문지 또는 카카오톡 투표 선거로 선출한다.)

<제4항> [임기]

학과학생회 부회장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다.

<제5항> [자격]

학과학생회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본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(2학년 진학생)으로 이전 학기 성적 3.5점 이상으로 한다. (단, 이전 학기 성적 3.0점 이상의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추천서에 의해서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.)

[총무] [서기]

제반 사업의 서무,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.

<제1항> [활동]

학과학생회 총무는 일체의 경비를 기록 및 작성하고 영수증을 수집, 첨부한다. 모든 학과운영비 사용내역을 간호학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학과학생회 서기는 회의 일정 내용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.

모든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<제2항> [의무와 책임]

본 학생회의 총무, 서기는 학생회 관련 서무,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대내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.

<제3항> [선출]

총무, 서기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 (단, 온라인 투표 시 학교 인증이 가능한 계정 사용하며 구글 설문지 또는 카카오톡 투표 선거로 선출한다.)

<제4항> [임기]

학과학생회 총무, 서기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다.

<제5항> [자격]

총무, 서기 입후보 자격은 본 학과에 재학 중인 1, 2학년 학생으로 누적 성적 3.5점 이상으로 한다. (단, 누적 성적 3.0점 이상의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추천서에 의해서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.)(1학년 재학생일 경우 이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.)

[기획부]

본회의 모든 활동 기획을 담당한다.

- 1) 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임원들을 도와 진행한다.
- 2) 과 행사에 대한 예산안을 행사 전에 시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다.
- 3) 과 행사에 대한 결산안을 행사 후에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작성한다.
- 4) 과 행사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전에 기획안을 작성한다.
- 5) 과 행사가 착오 없이 진행되는지 감독한다.

▷ 프로그램 : 학술제 기획·운영, 선·후배 간의 멘토·멘티 계획 및 활동

[문화체육부]

문화 활동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
- 1) 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임원들을 도와 진행한다.
- 2) 과 행사 진행 시 전반적인 연습과 일정을 총괄한다.

▷ 프로그램 : 나이팅게일 선서식 준비 운영 및 계획, 학생 봉사활동 관련, 4학년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자료 제공

[홍보부]

본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섭외, 홍보활동을 담당한다.

- 1) 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임원들을 도와 진행한다.
- 2) 과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조사 및 홍보를 총괄한다.
- ▷ 프로그램 : 신입생 정보지 작성, 학회 행사 홍보, 학회 활동 홍보 및 여론조사, 하랑뉴스 발간

제 4 장. 학과비 / 운영비

제 24 조

- ① 간호학생 모든회원은 소정의 학과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(학기당 1회. 1년 총 2회)
- ② 학생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한다.
(행사회비-워크샵, 축제, 나선식, 국가고시 준비등 기타 교내행사)
- ③ 학생회 임원에 대한 운영비는 학과비로 매 학기 초 책정한다.
- ④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및 기념품 증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적용한다.

구분	학과비	운영비
수입	매 학기 초 집행부 예산 계획 후 회비책정	매 학기 초 집행부 예산 계획 후 회비책정
지출	학과 관련 모든 일정에 필요한 지출 워크샵, 축제, 나선식, 졸업식, 소식지	운영비, 활동비, 회식비, 교통비, 각종 행사, 문구류, 복사, 기타 학생회 활동 경비

1. 예산 : 금액으로 표시된 업무계획서

*예산수립방법

점진적예산제 : 전 회계연도에서의 총비용이 옳다는 가정 아래 차기 년도 물가상승률이나 이자율 곱하여 예산작성

*영기준예산제 : 모든사 업과 활동에 대해 영기준 적용. 혁신적 분위기조성. 예산절약*예산의 종류

- 운영예산 : 부서의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소비하거나 사용할 서비스나 재화포함 (소모품, 활동비, 차량, 식사, 물품)
- 자본예산 : 주요 장비(명찰, 천막, 주막용품등)*예산 과정

예산편성(집행부)-예산심의/확정(대의원회)-예산집행(총무)-결산(총무)

학과비	운영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생회 총 예산은 매년 초에 학생회장과 부학회장, 총무, 서기, 기획부장, 홍보부장, 문화체육부장 7명이 의논하여 책정한다. ② 1년 동안 소요되는 학생회 총 예산을 시장조사를 통하여 책정한 후, 신입생 인원수에 맞게 나눈다. (국가고시준비-3,4학년 나선식준비-1,2학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회의,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에 대한 지출은 학과비와 구분하여 운영비라 한다.

2. 관리

학과비	운영비
워크샵, 축제, 체육대회, 나이팅게일선서식(2학년), 졸업반준비(4학년), 신입생환영(1학년) ① 학생회 예산은 매 학기 초 납입하며, 납부 이후 당 해에는 다시 걷지 않는다. ② 학생회 예산은 학생회 통장(총무 명의)으로 납입한다. ③ 학생회 모든 지출과 납부는 총무에게 승인 받는다.	회의 운영, 회식, 기타운영비, ① 학생회가 운영될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이나 공지용 프린트 비용은 운영비에서 지출한다. ② 4시간 초과일 경우 개별 식비가 지급된다. (1인 7,000원)

제 25 조 [회계연도]

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6 조 [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]

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심의 의결하며, 결산은 매 학기마다 공개원칙으로 인해 게시판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 (매 학기 말)

제 27 조 [재정 및 개정] 시행세칙의 재정 및 개정은 본회의 운영위에서 한다.

제 28 조 [발의] 본회의 회칙개정은 학생회장, 운영위 1/2, 전체 회원 1/10 이상으로 발의된다.

제 29 조 [의결] 본회 회칙의 전체적 개정은 학생총회에서 의결하고 단, 조, 항의 세부적인 삽입 및 개정은 운영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로 한다.

제 30 조 [공포, 효력 발생]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1. 본 회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 2. 2019년 02월 28일 이전의 회칙을 본 회칙으로서 대신한다.
 3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- 이 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의 회칙 및 관례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의결한다.

개정

1. 2021년 2월 22일 개정한다.
2. 본 회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 회칙

2021년도 학생회 하랑

학회장 : 박 유 나(印)

부학회장 : 김 은 비(印)

총무 : 이 정 인(印)

서기 : 신 유 빈(印)